서산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5호

2026년 서산시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서산시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사진·영상 촬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의 정 홍 보 사진·영상 촬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의회사무국

※ 약정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 등 종합적 검토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라.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 자격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

요 건	요 건 내 용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응시연령	18세 이상
지역 및 성별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나.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기준일)

임용예정분야 (직급)	자 격 기 준
의 정 홍 보 사진·영상 촬영	▶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있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홍보용 사진 및 영상의 촬영·편집 등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인정
	<우대조건> ❍ 행사지원 업무 특성상 토·일(공휴일) 및 주·야간에 관계없이 근무 가능한 자 ❍ 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 (실제 운전 가능한 자) ❍ 사진기능사(국가자격증),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자격증 등 소지자

<유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보완서류 검증을 위한 '폐업사실확인서', '4대보험자격 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추가 제출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관련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선발 직무분야 직무기술서

① 직무기술서 - 의정홍보(사진·영상 촬영)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의정홍보 (사진·영상 촬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8급 상당)	1명

근무예정부서
서산시의회(의회사무국)

주요업무	○ 의정활동 사진·영상 촬영 ○ 사진·영상 편집, 기록관리 홍보영상 제작 ○ 기타 의정 홍보 업무 지원
필요역량	○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필요지식	○ 사진·영상 촬영 및 편집에 대한 전문 지식 ○ 지방의회 의정활동 및 홍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 ○ 홍보 관련 법령(저작권·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이해
응시자격요건 **경력**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홍보용 사진 및 영상의 촬영·편집 등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실무경력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를 상세히 명시)**
우대요건	○ 사진·영상 관련 프로그램(포토샵, 프리미어프로 등) 자격증 소지 또는 운용 가능한 사람 ○ 주말·공휴일 근무, 야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 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을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제55조제4항)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지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심사하며,
아래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중·하로 평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불합격 기준(3개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시)

①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③ 면접시험 포기 및 면접시험 불참

합격자 순위 결정 기준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상·중·하'의 개수)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2.(금)	10. 12.(월) ~ .13.(화)	10. 19.(월)	추후일정 개별안내	추후일정 개별안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타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서산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 서산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cc.go.kr) → 의회소식 → [공고/고시]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13.(화) [2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 접수

-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제외)**
- 접수장소 : 서산시의회 의정팀

② 등기우편 접수

- 접수주소 :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서산시의회 의정팀
- 우편봉투 겉면에 **'서산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표기

※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5,000원) 구입 동봉 (금융업무 마감시간 유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날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 우편접수 시 응시자는 **접수마감일(18:00) 이내에 반드시 전화(041-660-2524)로 등기번호를 통보하여 응시의사 전달**

나. 제출서류 (※ 스테플러 사용 금지,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함께 첨부

연번	서류항목	비고
1 (필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2 (필수)	▪ **응시원서 1부** - **응시 수수료 : 서산시 수입증지 5,000원 ※ 정부수입인지 불가** (서산시청 의회동 2층 민원봉사과 10번, 11번 창구에서 구입 가능) ※ 방문접수 : 응시원서에 서산시 수입증지 부착 ※ 우편접수 :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마감시간 유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	**별지 1**

3 **(필수)**	▪ **이력서 1부** -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불인정	**별지 2**
4 **(필수)**	▪ **자기소개서 1부** - 서식의 작성요령 참고, A4 용지 1매 내외 작성	**별지 3**
5 **(필수)**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서식의 작성요령 참고, A4 용지 1매 내외 작성	**별지 4**
6 **(필수)**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하며,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채용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인정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 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별지 5**
7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출력가능 - 보험가입 전체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8 **(필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 서명 필수	**별지 6**
9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자필 서명 필수	**별지 7**
10 **(필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별지 8**

11 (필수)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자필 서명 필수	**별지 9**
12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7. 복무 및 보수, 임용예정일

가. 복무 : 일반공무원에 준하며, 주당35시간 근무(1일 7시간)

나.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직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구 분	근무시간	상한액	하한액	**연봉액 (35시간 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62,096천원	44,296천원	**38,759천원**

※ 연봉외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연봉 외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다. 임용예정일

○ **2026년 10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채용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

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마.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5. 7. 28. ~ 2025. 8. 30.

사.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채용관련 문의 : 서산시의회 의정팀 인사담당자 (041-660-2524)